

중국 내 한국식품 모조품 대응을 위한 현지 관련법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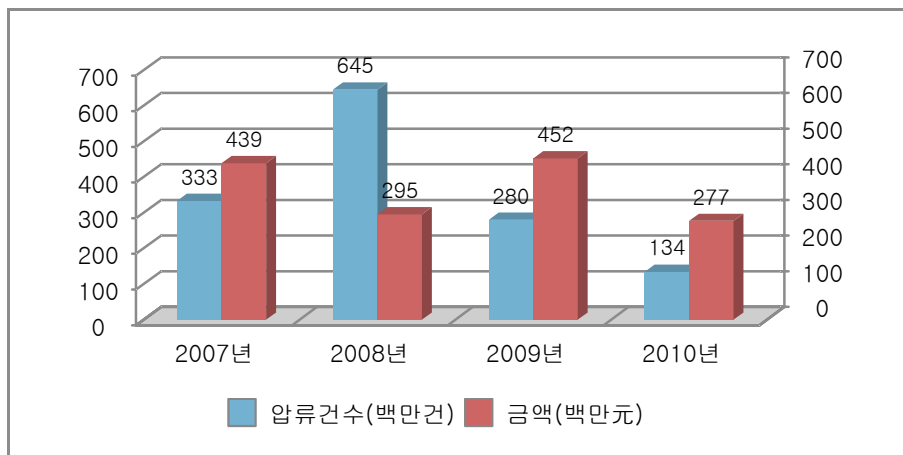
자료원 : 베이징aT센터

□ 수출입단계 (세관총서 관리감독을 통한 대응방안)

○ 지식재산권 세관등록 보호

- 중국산 모조품의 수출 및 해외 모조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중화인민공화국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가 있으며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직접 해당 세관에 단속을 신청할 수도 있음
- 2010년 중국세관이 압류한 지식재산권침해화물은 134백만건에 달하며 상품 가치가 277백만元に 달함

[2007~2010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화물 압류현황]



○ 세관등록의 중요성

- 지식재산권 세관등록은 세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전제조건
- <보호조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이 권리 침해화물을 발견하더라도 주동적으로 기 화물의 수출입을 중지할 권한이 없으며 침해화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음
- <보호조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등록 후에도 권리침해화물의 출입경 직전에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실제 사례로 보면 권리침해화물은 주로 세관의 관련화물 검사에서 발견되며, 지식재산권등록에서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의 법률상황, 연계방식, 합법적으로 사용한 상황, 권리침해혐의화물 상황, 관련도안과 사진 등을 제

공함에 따라 세관이 일상 감독관리 과정에서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주동적으로 발견하여 압류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경제 부담이 비교적 적다. <보호조례> 실시방법에 따르면 세관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10만 원 이하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를 요구한 화물가치와 동등한 담보를 요구
- 권리침해자 견제작용. 세관이 수출입 권리침해화물에 대하여 수출입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을 앞당겨 할수록 권리침해화물의 수출입업체에 대한 견제작용을 할 수 있음. 이외 가공무역업체들도 세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열람을 통하여 수주 받은 가공수출화물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한국산 등록현황

- 현재 등록상황으로 보면 전체 23,926건 중 중국이 12,294건에 달하며 미국이 3,879건, 일본이 1301건 독일이 892건 등 선진국 등록수준이 높으나 한국은 157건으로 아시아 지역의 대만(374건), 홍콩(623건) 보다 낮은 수준
- 한국산의 등록현황을 조회하면 대부분 상표권 등록이며 저작권, 외관 디자인, 특허권 등록도 부분 있으나 식품관련 등록은 아주 적어 농심, 카스 등 부분 업체 상표권만 등록되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2010년 3월 17일 수정 발표

목록

1장 총칙

2장 지식재산권 등록

3장 권리 침해 혐의화물의 압류신청과 처리

4장 법률책임

5장 부칙

2장 지식재산권 등록

7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세관총서에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 이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 2) 지식재산권 명칭, 내용 및 관련정보
- 3)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상황
- 4)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산지, 출입경지 세관, 수출입상, 주요특징, 가격 등

5) 이미 확보한 지식재산권 침해화물의 제조사, 수출입상, 출입경지세관, 주요특징, 가격 등 상기 규정한 신청서 내용에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8조 세관총서는 제반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사업일내에 등록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등록거부 시에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관총서는 등록을 거부한다.

- 1)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 2) 신청자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아닌 경우
- 3) 지식재산권이 법률, 행정법규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

10조 지식재산권의 세관보호등록은 세관총서 등록허가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세관총서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매회 연장한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식재산권 세관보호등록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식재산권이 법률과 행정법규의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 세관보호등록은 실효된다.

11조 지식재산권 등록상황에 변화가 생긴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변화발생일로부터 30사업일내에 세관총서에 등록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받아야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상기규정에 따라 등록변경 혹은 말소수속을 하지 않아 타인의 합법적인 수출입 혹은 세관의 감독관리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경우 세관총서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등록은 취소할 수 있으며 주동으로 관련 등록을 취소할수도 있다.

3장 권리 침해 혐의화물의 압류신청과 처리

1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출입상황을 발견한 경우 화물의 출입경지역 세관에 권리침해혐의화물에 대한 압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3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권리침해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한다. 신청서는 이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
- 2) 지식재산권 명칭, 내용 및 관련정보
- 3)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령인, 선적인 명칭
- 4) 권리침해혐의화물의 명칭, 규격 등
- 5)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수출입항, 시간, 운송도구 등

권리침해혐의화물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서에 세관등록번호를 기재해야한다.

1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 신청할 경우 수출입화물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해야하며 담보는 압류신청에 따른 송수하인의 부당한 손해배상과 세관의 화물압류 후 창고보관, 처리 등 비용 충당에 사용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창고업체에 직접 창고비용을 지급시 담보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제정한다.

15조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압류를 신청할 경우 본 조례 13조 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1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한다. 세관은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 시 지식재산권 관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압류증명서를 수하인 혹은 송하인에 송달해야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압류를 신청했으나 본 조례 13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1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신청을 반려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16조 세관에 의해 수출입화물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세관은 지식재산권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관리자가 통지 받은일로부터 3사업일내에 본 조례 13조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하고 관리자에 서면통지하며 세관압류증명서를 수하인 혹은 송하인에 송달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하지 못한다.

17조 세관의 동의하에 지식재산권관리자,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관련화물을 확인할 수 있다.

18조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 시 서면으로 세관에 설명하고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19조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수출입화물이 특허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에 화물가치와 동등한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화물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며 세관은 담보를 반환해야한다.

20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 침해혐의를 발견하여 지식재산권관리자에게 통지 후 관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혐의화물의 압류를 요청 시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사업일내에 압류된 혐의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인정해야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지식재산권관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21조 세관이 압류된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조사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주관부서에 협조 요청 시 관련지식재산권주관부서는 이에 협조해야하며 지식재산권주관부서에서 수출입화물의 권리침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세관에 협조 요청시 세관은 이에 협조해야한다.

22조 세관이 압류된 권리침해혐의화물 및 관련 사실을 조사할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자와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이에 협조해야한다.

23조 지식재산권관리자는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한후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권리침해혐의화물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권리침해행위 정지처분 혹은 재산보전조치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인민법원의 권리침해행위 정지처분 혹은 재산보전조치와 관련된 집행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해야한다.

24조 이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압류한 권리침해혐의화물을 통과시켜야한다.

- 1) 세관이 본 조 제 15조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일로부터 20 사업일내에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2) 세관이 본 규정 16조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일로부터 50 사업일내에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를 받지 못하고 압류된 권리침해혐의화물이 조사 결과 침해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3) 특허권침해혐의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세관에 화물가치에 동등한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 4)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충분한 증거와 증명으로 세관이 해당화물이 지식재산권관리자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
- 5) 세관이 압류한 권리침해혐의화물을 권리침해화물로 인정하기 전에 지식재산권관리자가 혐의화물의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25조 세관이 본 조 제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한 경우 지식재산권관리자는 창고와 보관 및 처리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지식재산권관리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담보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담보인에게 관련 책임을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혐의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관리자가 지불한 창고와 보관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권리침해방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로 볼 수 있다.

26조 세관은 지식재산권보호조치과정에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건을 발견시 법에 따라公安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토록해야한다.

□ 중국내 유통단계(공상총국 관리감독을 통한 대응방안)

○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 유통단계에서 모조품은 중국의 상표법(특허권이 있는 경우 특허법 적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 특히 상표법이 규정한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규정에 따라 적극 대응해야하며 조사 및 처리과정이 길다하여 포기 시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전용권은 중국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 등록된 상표와 사용을 확정한 상품에 한해서 보호됨. 단 저명(유명)상표는 보호되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정 국가 내에서만 저명한 상표가 중국 내에 이미 등록되어 상표등록이 기각된 사례도 있어 한국 내 상표의 보호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저명상표의 여부 판단요소로는 1) 대중들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 2) 상표의 사용기간 3) 상표 홍보사업의 지속시간과 홍보강도 및 지리범위 4)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5) 상표가 저명한 기타요소 등이 있음
- 아울러 기존 수출업체 혹은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국내 상표 등록을 필수로 진행하고 등록분야도 최대한 넓게 등록해야 함

[중국의 농식품 관련 상표등록 상품분류]

분류	내용
제29류	육류, 어류, 가금 및 야생동물, 육즙, 염장, 건조 및 숙 과일 채소, 과일젤리, 과실썰, 당침, 알류, 우유 및 제품, 식용유와 유지
제30류	커피, 차, 코코아, 당, 쌀, 식용전분, 사고, 커피대용품, 밀가루 및 곡류제품, 빵, 과자와 사탕, 얼음조제식품, 벌꿀, 시럽, 신선효소, 발효분, 식염, 겨자, 초, 소스, 향신료, 음용얼음
제31류	농업, 원예, 임업제품 및 분류하지 않은 곡물, 생축, 신선과일과 채소, 종자, 초목과 화훼, 동물사료, 맥아
제32류	맥주, 광천수와 사이다 및 기타 무주정음료, 과일음료 및 과즙, 시럽 및 음료에 사용하는 제제
제33류	알콜 함유 음료(맥주 제외)
제34류	연초, 흡연도구, 성냥
제43류	음식물과 음료서비스 제공, 임시숙박

○ 업체 및 정부단체 대응

- 모조품 신고는 등록상표 전용권자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 가능함. 단 분쟁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에 협상 및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권리자만이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처리토록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장조사 여건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위하여 정부나 단체 및 협회 차원에서 시장조사 후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업체에 제공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13년 8월 30일 수정 발표

목록

1장 총칙

2장 상표등록 신청

3장 상표등록 심사기준

4장 등록상표 연장, 변경, 양도 및 사용허가

5장 등록상표 무효선고

6장 상표사용 관리

7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8장 부칙

7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56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심사기준을 받아 등록된 상표와 사용을 확정된 상품에 한한다.

57조 다음 각항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로 본다.

- 1)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2)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 3)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4) 타인이 등록한 상표 표시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경우;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등록상표 표시를 판매한 경우
- 5) 상표등록인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의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 6)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권 전용권을 실시하는 행위를 돕는 경우
-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조성한 경우

58조 타인이 등록한 상표, 미등록한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에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부정당 경쟁행위를 구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처리한다.

59조 등록상표에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규격이 포함되어있거나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지명이 포함된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입체표기등록상표에 포함된 상품 자체의 성질로 생성된 형태,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있어야 하는 상품형태 혹은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가지게 하는 형태에 대해서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상표등록인이 상표등록신청 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인보다 이미 먼저 동일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일정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기존 사용범위 내에서 동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은 없으나 구별 가능한 표시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0조 본 법 57조에 열거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로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 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인 혹은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토록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처리 시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하고 침해상품 및 침해상품 제조와 등록상표 표기를 위조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몰수, 폐기한다.

불법경영액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원 이하인 경우 25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5년 내에 2차 이상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하였거나 기타 엄중한 침해경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합법적으로 상품을 취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판매중지를 명한다.

상표권전용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정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조정서 효력 발생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61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조사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62조 현금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미 취득한 위법혐의 증거 또는 제보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 처리할 경우 아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관련 당사자를 질문,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 조사
- 2) 당사자와 침해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 혐의에 이용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4) 침해활동과 관련한 물품 검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물품에 대한 봉인과 압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상기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협조해야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상표권 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상표권 귀속에 분쟁이 있거나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사건의 조사처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가 소실된 후에는 사건의 조사처리 절차를 이어 가거나 종결해야한다.

63조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 확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해 혹은 침해자의 이익 모두 확정이 어려운 경우 기 상표의 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여 경위가 엄중한 경우 위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정함에 있어 권리자가 증거를 최대한 제시 하였으나 침해행위와 관련한 장부와 자료를 침해자가 주로 장악하고 있는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한 장부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은 판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 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정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배상을 판결

64조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신고 받은 침해자가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전용권자에게 3년 내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자가 3년 내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받은 기타 손실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고 받은 침해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자신이 합법적으로 당해 상품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품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없음

65조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중 이거나 곧 실시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고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장래에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 및 재산보전 조치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66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소멸할 수 있거나 추후 증거 취득이 어려울 경우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67조 상표등록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종류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등록상표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고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상표등록자의 상표전용권보호 내용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실시조례

2014년 4월 29일 수정 발표

목록

1장 총칙
2장 상표등록 신청
3장 상표등록 재심
4장 등록상표 변경, 양도 및 연장
5장 국제상표 등록
6장 상표평심
7장 상표사용 관리
8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9장 상표대리
10장 부칙

8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 75조 타인 상표전용권 침해에 저장, 운송, 우편, 인쇄, 은닉, 경영장소, 온라인상품거래플랫폼 등을 제공한 행위는 **상표법 57조 6항이 규정한 편의조건 제공에** 해당된다.
- 76조 동일종류 상품 혹은 비슷한 상품에 타인이 등록상표 혹은 비슷한 표기를 상품명칭으로 혹은 디자인에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한 행위는 **상표법 57조 2항이 규정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 해당된다.
- 77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누구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고 혹은 제보할 수 있다.
- 78조 **상표법 60조 불법 경영액** 계산에 있어서 이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1)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판매가격
 - 2) 판매하지 않은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표시가격
 - 3) 이미 조사해낸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실제 판매한 평균가격
 - 4) 권리를 침해받은 상품의 시장 중간가격
 - 5)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발생한 영업수익
 - 6) 기타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할수 있는 요소
- 79조 **상표법 60조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1) 공급회사의 합법적인 도장이 날인된 화물공급명세서와 화물대금영수증이 있으며 조사를 거쳐 사실하거나 공급회사가 인정한 경우
 - 2) 양자가 체결한 계약서가 있으며 조사를 거쳐 진실하게 이행한 경우
 - 3) 합법적인 구매영수증이 있으며 영수증 내역이 관련 상품과 대응되는 경우
 - 4) 기타 합법으로 관련 상품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80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상품임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기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권리침해화물 제공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한다.

81조 안건과 관련된 등록상표권 존속문제가 현재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심의중이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중이며 안건결과가 안건의 성질 규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법 62조 3항이 규정한 상표 존속권 분쟁**에 속한다.

82조 상표권 침해 조사과정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권리자에게 안건과 관련된 상품이 권리자가 생산 혹은 위탁생산여부에 대하여 식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조례> 상표등록자의 상표전용권보호 내용